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8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태종, 김한주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거제시 D 임야 31,736㎡ 중 3,300/31,736 지분에 관하여 2021. 3. 12. 이루어진 증여계약해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 7. 27. 접수 제29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F은 1989. 5. 15. 거제시 D 임야 3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는 2015. 12. 27. 'C는 그 소유의 거제시 D 임야 31,767㎡ 중 6m 도로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되, 만약 기부채납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영구히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다. C가 향후 D 임야를 매도할 경우 반드시 매수인에게 고지하여 피고가 위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및 양도하여도 도로 사용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피고는 위 토지사용승낙을 조건으로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3,300㎡)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토지승낙사용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2016.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E, F의 지분에 관하여 G(피고의 아버지), H(피고의 형), 피고, C는 각 3,300/31,736 지분, I(H의 배우자)는 18,536/31,736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C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인데,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소장 부분 송달로써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가단10783호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1. 3. 12.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21. 5. 26.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21. 7. 27.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1.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2. 17. 현재 C에 대하여 74,018,682원의 채권이 있는데,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자녀 내지 친척인 피고에게 2021. 3. 12.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해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C 소유의 거제시 D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신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F 등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C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C는 도로 개설에 필요한 기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산지훼손으로 인하여 거제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게 되었으며(이 법원의 2022. 6. 15.자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이 2019. 12. 18.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D 임야를 매각 받아, 2020.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정한대로 D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가단10783호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1. 3. 12.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원고는 피고가 C의 자녀 내지 친척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설령 C가 피고의 증여계약해제에 관하여 적극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